

의안번호	제 호
의견제시연월일	2014 . .

의견청취

**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**



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4. 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두되고 있음
- 이에,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지설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A	수질오염 방지지설	분뇨 처리 시설	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 일원	-	증)19,380.6	19,380.6		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

-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A	수질오염 방지지설 (분뇨처 리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오염방지지설 (분뇨처리시설) 신설 A=19,380.6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 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 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함

3. 관련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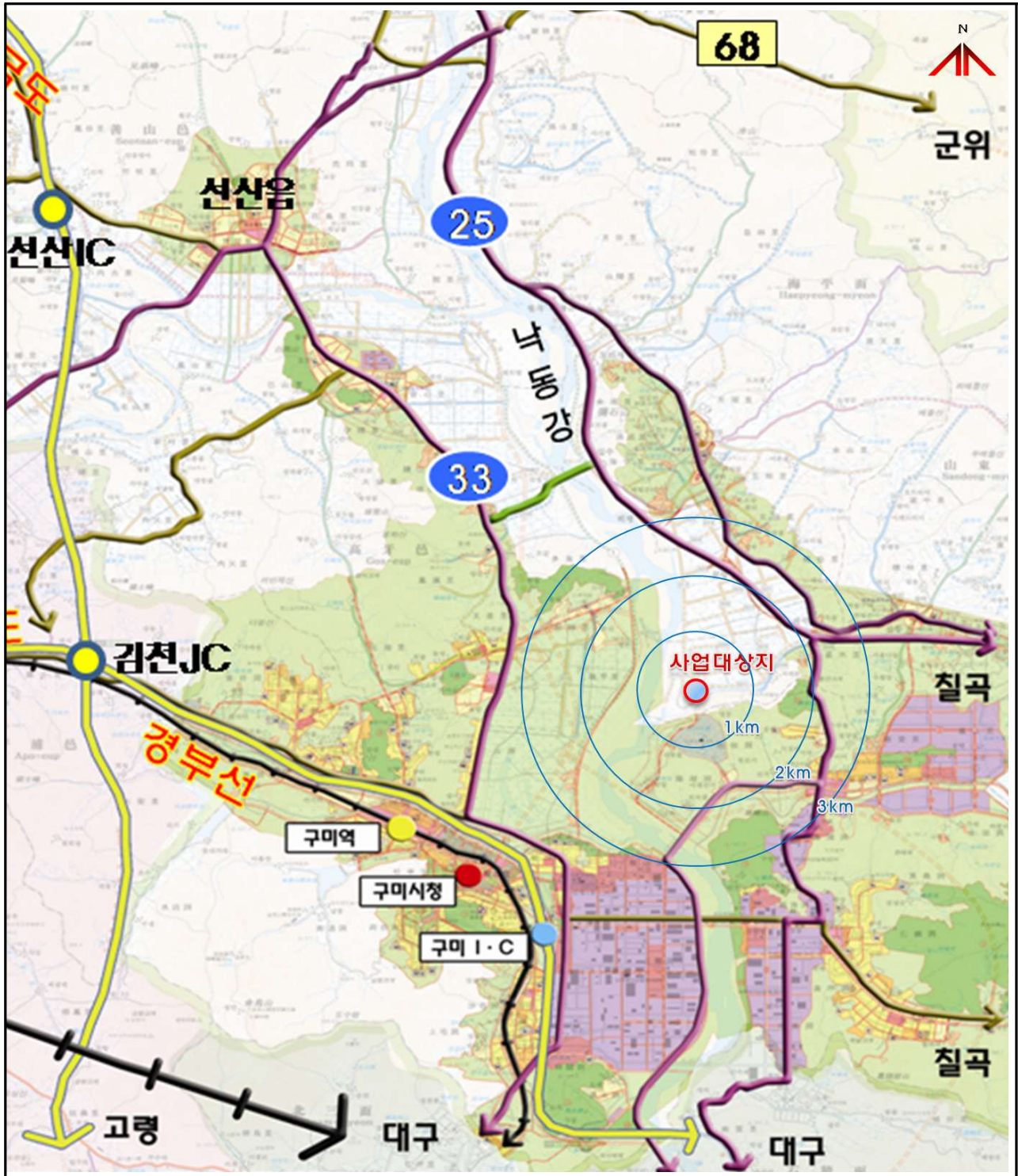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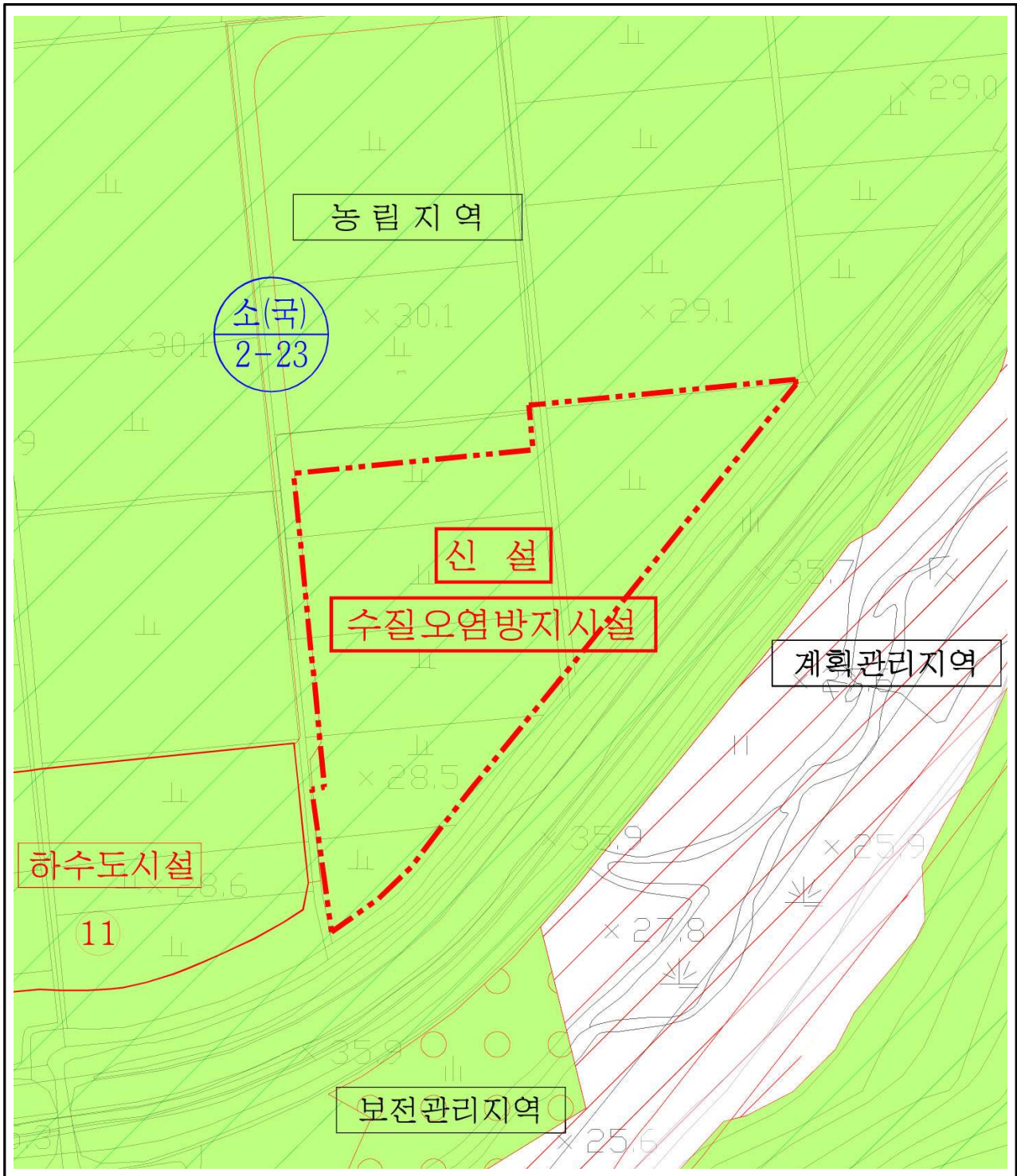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거. 수질오염방지지설

4. 붙임

1)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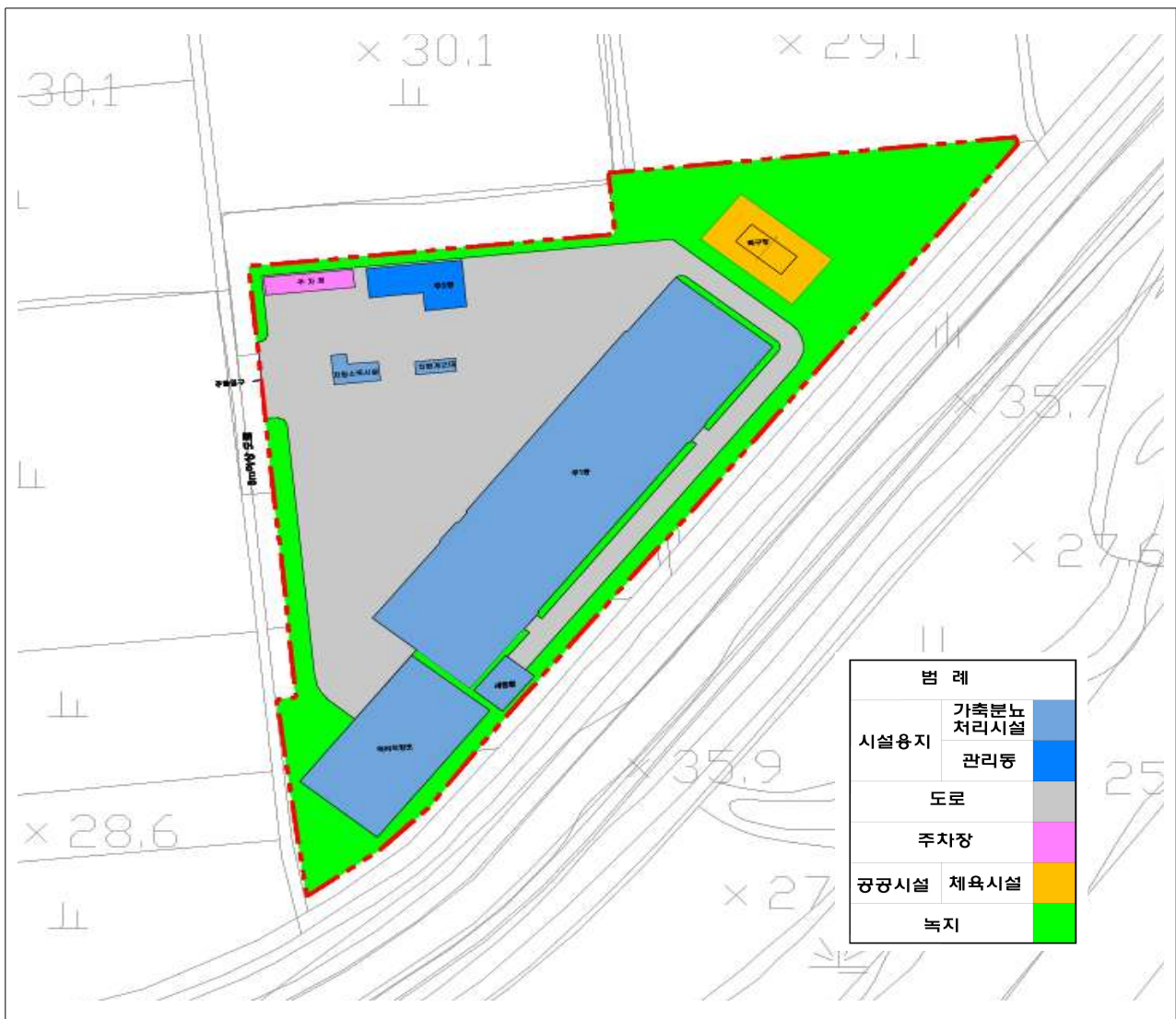
2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“안” :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



3)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구 분	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19,380.6	100.0	
시설용지	소 계	5,723.15		
	가축분뇨처리시설	5,460.59		가축분뇨 처리시설, 차량소독시설, 차량 계근대
	관리동	262.56		관리동
도로		7,857.29		
주차장		115.00		10면 (법적주차대수 해당없음)
공공시설	소 계	495.00		
	체육시설	495.00		족구장
녹지		5,190.16		

토지이용계획도



4) 건축배치계획도 “안”

